

## 포 상 규 정

1986. 4. 21 제정  
2002. 2. 20 일부개정  
2007. 1. 23 일부개정  
2013. 6. 1 전부개정  
<교무팀, 인력개발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함)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의 권한과 대상) ① 본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.

②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
2.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
3. 본교에 기여한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

제3조(포상의 사유) 포상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교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
2.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행위

제4조(포상의 방법)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(기념품 또는 상금)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포상의 금지)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포상을 하지 않는다.

제6조(포상의 시기) 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기포상: 본교 개교기념일 등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상
2. 특별포상: 필요한 때에 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포상

제7조(포상의 기준) ① 포상을 함에 있어서는 포상의 목적 또는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포상의 목적 또는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포상을 하지 않는다.

제8조(주관부서)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: 교무처
2. 직원: 총무처
3. 의료원 소속 직원: 의료원
4. 본교 소속의 기관·부서: 기획예산처
5.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: 대외협력처

제9조(포상후보자 추천)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한다.

② 포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[별지서식 1: 포상추천서]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.

1. 교원: 교무처장
2. 직원: 총무처장
3. 의료원 소속 직원: 의료원장
4.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: 기획예산처장
5.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: 대외협력처장

제10조(포상후보자에 대한 심사) ① 포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구에서 담당한다.

1. 교원: 교원인사위원회

- 2. 직원: 직원인사위원회
- 3. 의료원 소속 직원: 의료원인사위원회
- 4.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: 처장회의
- 5.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: 처장회의

② 포상후보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구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(시행세칙 또는 지침)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주관부서의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4월 2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전면개정)

## [별지서식 1] 포상추천서

<b>포상 추천서</b>				
포 상 후보자	개인( )	성 명		생년월일
		소 속		직 위
	기관·부서( )	기관·부서명		
포상의 종 류				
추천요지				
공적사항 개 요	<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적조서 참조>			
기 타 참고사항				
<p>본교 「포상 규정」에 따라 위 사람/기관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천자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려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